

# 소중한 나의 투표

21세기를 향한 캘리포니아 주의 투표 계획



주무장관 KEVIN SHELLEY

myVote  
counts

[www.myvotecounts.org](http://www.myvotecounts.org)

미국 투표 지원법  
(HAVA: Help America Vote Act)

# 소중한 나의 투표

## 21세기를 향한 캘리포니아 주의 투표 계획



## 목차

주요사항 요약	1
머리말	3
개요	6
제1장: 제III편의 요건을 준수	9
제2장: 요건지불금의 분배	18
제3장: 유권자 교육, 선거담당관 교육 및 선거관리인 교육	19
제4장: 투표시스템 지침과 절차	22
제5장: HAVA 기금 관리	23
제6장: 예산	24
제7장: 활동의 유지	28
제8장: 성과목표 및 측정기준	29
제9장: 주 단위 행정 불만제기절차	30
제10장: 제1편에 의한 지불금의 영향	31
제11장: HAVA 주 계획 관리	32
제12장: 이전 회계연도로부터 변경된 주 계획	33
제13장: 주 계획 수립 위원회	34
주 계획 위원회 구성원	37
권말주	47





## 주요사항 요약

2003년 9월

미국의 민주주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000년 11월에 플로리다 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투표 절차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2002년 11월의 전국 총선거에서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의 수는 실망스럽게도 39.9 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sup>1</sup> (권말주 참조) 따라서, 현재 많은 유권자들은 투표 절차에 대해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권자의 불신과 투표 불참이라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의회는 2002년 10월에 2002년 Help America Vote Act(미국 투표 지원법, "HAVA")를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연방법은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표를 유도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의 조치를 많이 담습했으며, 여기에는 투표 장치의 현대화도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2002년 3월에 유권자들이 채택한 발의안 제 41 호, 2002년 Shelley-Hertzberg Voting Modernization Bond Act(투표 현대화 채권법)를 통해서 이러한 노력을 선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에 실시된 투표에 유권자의 약 36 퍼센트만이 참여하여 충격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임으로써 캘리포니아 주도 자체적으로 선거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주무장관인 저에게는 투표 절차의 무결성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보에 입각한 유권자(informed voters)들의 참가를 늘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저는 21세기의 투표 계획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표하는 24명의 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다음의 도시에서 다섯 번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프레즈노 및 새크라멘토. 저희는 투표 절차를 보다 유권자 친화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규모와 다양성의 측면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HAVA의 조항들을 가장 잘 시행하는 방법에 관해 250여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2003년 6월 17일에, 저는 예비계획을 공중 심사(public inspection)에 회부하고 의견을 요청했으며, 이러한 취지를 공고했습니다. 그 후에, 심사와 의견을 요청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영어와 스페인어로 작성된 예비계획의 사본을 저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과 단체에 사본을 발송했습니다. 예비계획은 2003년 7월 17일 이후까지 공시되었습니다. 저는 예비계획에 관한 53건의 의견서를 접수했습니다.

주민들과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예비계획을 기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종 계획을 작성할 때 주민들과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고려했고 예비계획에 대한 공중과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했습니다. 최종 계획에는 이러한 모든 의견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소중한 나의 투표"는 투표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내서입니다. "소중한 나의 투표"는 캘리포니아 주가 투표 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사용 가능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HAVA를 시행하는 방법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모든 유권자는 "나의 투표가 소중한"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저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 ◆ **투표 장치의 현대화.** 펀치카드 투표기는 교체될 것입니다.
  - ◆ **장애이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소의 시설을 보완.** 모든 투표소에 최소한 한 대의 터치 스크린 투표장치를 설치할 것입니다.
  - ◆ **캘리포니아 주의 임시투표(provisional voting) 절차를 보강.** 임시투표 유권자들은 그들의 투표가 집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증가.** 유권자들은 투표소나 다른 장소에서 더 많은 정보를 받게 됩니다.
  - ◆ **캘리포니아 전주(statewide)의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개선.**
  - ◆ **유권자들에게 투표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노력 확대.** 젊은 층을 포함하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투표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 **선거담당관과 선거관리인에 대한 교육 강화.** 선거담당관과 선거관리인들은 더 많은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 ◆ **캘리포니아 주의 불만제기 절차를 개선.** 선거법 위반에 관한 기존의 캘리포니아 주 불만제기 절차는 보다 형식을 갖추고 접근 가능하도록 개선될 것입니다.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은 HAVA 및 발의안 제41호에 의해 근거하여 조달합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의 시행에 비용이 얼마나 들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의회가 향후 수년 간 지출할 금액과 가장 비용 효과가 높은 시행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번수입니다. 모든 지출에는 주 및 연방 정부의 엄격한 감사 절차가 적용됩니다.
- 저는 캘리포니아 주 투표의 본질을 표현한 캐치프레이즈인 "소중한 나의 투표"를 실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KEVIN SHELLEY  
주무장관



## 머리말

캘리포니아 주는 인구, 경제적 에너지 및 풍부한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다양성에 있어서 모든 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주라고 인정 받고 있습니다. 이 주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세계로부터 모험가,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 꿈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은 땅이었으며, 그들은 자신과 자녀들의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이 주의 계곡, 산맥, 해변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주의 모토인 유레카—"나는 발견했다"—는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주가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알았고 지금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 시스템에는 이 주 특유의 규모와 다양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투표 연령 인구는 약 21,588,461명<sup>2</sup>으로서 하원에서 53석을 배정 받으며 대통령 선거인단 의석의 1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방 선거는 이 주의 최고선거책임자 역할을 하는 캘리포니아 주무장관의 감독 아래 이 주의 58개 카운티에서 실시됩니다.<sup>3</sup>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최대의 선거관할구로서 투표 연령 인구가 5,541,908명이며, 가장 인구가 적은 알파인은 투표 연령 인구가 919명에 불과합니다.<sup>4</sup>

캘리포니아 주에서 무결함 선거를 실시하는 작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에 독특한 일련의 상황과 주민들이 정치적 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개혁 조치때문에 특히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선거구 수

캘리포니아 주에는 약 25,000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전주 선거를 할 때 이처럼 많은 투표소에 총원을 하려면 100,000명이 넘는 신뢰성 있고 교육을 받은 선거관리인이 필요하며 위치가 편리하고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투표소도 필요합니다. 충분한 선거관리인을 총원하여 교육하고 투표소를 설치할 적절한 장소를 모색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담당관에게 계속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선거 자료

매번 전주 연방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등록유권자가 있는 각 가정에 주의 투표 법안, 전주의 입후보자, 유자격 정당 및 기타 사항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캘리포니아 주 투표 팜플렛을 보냅니다. 이밖에도, 각 유권자는 지역 선거담당관으로부터 투표용지 견본, 지역 투표 팜플렛 및 기타 정보를 받습니다. 또한, 선거 관리 사무소 웹사이트와 투표소에서 다른 선거 자료들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은 매우 분량이 많은 작업이며, 일부 유권자에게는 이러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투표용지의 복잡성

캘리포니아 주의 투표용지는 복잡하기로 유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투표용지는 유권자에게 제출된 수많은 투표 법안과 출마한 입후보자,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선거에 참가할 자격을 얻은 수많은 정당들로 인해 매우 길 때가 많습니다. 투표용지의 복잡성은 투표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민들에게 투표에 참가하도록 권유하는 일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 수천 가지의 투표용지 종류

전주 예비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담당관들은 60,000여 종의 투표용지를 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권자에게 잘못된 종류의 투표용지를 제공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 지리적 문제

캘리포니아 주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처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모독 카운티와 같은 광활한 지역, 트리니티 카운티와 같은 삼림 지역, 또는 샌버나디노 카운티와 같은 사막 지역과 거의 유사한 점이 없습니다. 선거 절차에는 이러한 지리적 다양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선거담당관과 유권자에게 모두 문제를 안겨줍니다.



"HAVA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모든 유권자가 '나의 투표가 소중하다'고 말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접근 가능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절차로 시행할 수 있고 또 시행할 것입니다."

- 캘리포니아 주무장관 Kevin Shelley

## 투표시스템

2002년 12월 24일 현재, 19개의 회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용하도록 인가된 23개의 투표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카테고리 포함됩니다: 광학스캔, DRE/터치 스크린, 펀치카드. 카운티들은 인가된 시스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체 카운티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같은 카운티 내에서도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시스템과 부재자 투표를 집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선거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복잡해지고, 유권자와 미디어를 교육하기가 어렵고, 유권자가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이사하는 경우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기투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선거일 29일 전부터 우편으로 투표하거나 여러 선거 사무소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투표는 선거담당관이 선거 준비를 하는 기간을 줄이고, 선거운동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투표 시기의 측면에서 유권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제공합니다.

## 정당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정당이 7개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폐쇄형 예비선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각 정당에 등록된 유권자들이 예비선거에서 사용할 투표용지를 각 정당별로 다르게 제작해야 합니다. 한 정당에 소속되기를 거부한 유권자들은 예비선거에서 법안과 무소속 입후보자에게만 투표하거나, 또는 특정 정당의 지명 절차에 참가하기 위한 투표용지를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 임시투표

1980년 이후, 캘리포니아 주법은 투표소에서 투표 자격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유권자에게 임시투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의 총선거에서 약

200,000명이 임시투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투표는 약 60 퍼센트만이 최종적으로 집계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임시투표는 선거일 후에 투표 자격에 대한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선거관리인과 유권자에게 임시투표 절차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선거 결과의 발표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 우편 투표

점점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는 대신에 우편으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1962년에는 유권자의 3 퍼센트 미만이 우편으로 투표한 것에 비해, 2002년 11월의 총선거에서는 유권자의 27 퍼센트 이상이 우편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최근의 법률<sup>5</sup>은 "영구 부재 투표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점점 더 많은 유권자들이 영구적으로 집에서 투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편 투표는 선거담당관이 선거 준비를 하는 기간을 앞당기고, 직접 투표에 대한 도표 작성에 사용하는 것과 다른 도표 작성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우편 투표용지는 선거일 이후에 처리되므로 선거 결과의 발표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특별 부재 투표자 신분<sup>6</sup>이 부여되고 선거일 60일 전부터 투표용지의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해외유권자 및 군인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 언어의 다양성

모든 주민이 선거 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보장하고 연방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선거 자료를 제작하고 구두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투표용지, 투표용지 견본 및 다른 자료와 구두 지원을 다음과 같은 7개 국어로 제공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필리핀어) 및 베트남어. 일부 선거관할구에서는 지역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언어로도 서면 및 구두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도 무결함 선거의 실시를 방해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기회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선거 시스템 개혁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연방법인 2002년 Help America Vote Act-HAVA<sup>6</sup>-의 많은 조항들이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법률, 규정 또는 절차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 ◆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75년에 우편 등록을, 그리고 1978년에 요구에 의한(on demand) 우편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 ◆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00년에 영구 부재자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 ◆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2002년의 예비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프리스코어 펀치카드 투표를 교체하기 위한 기금의 일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안 제41호를 채택했습니다;
- ◆ 캘리포니아 주는 Calvoter라는 전주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 캘리포니아 주는 투표를 하기 전에 투표용지를 정정 또는 교체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 임시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선거법 위반에 관한 전주 불만제기절차 확립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불만 제기를 위해 사용하는 무료 전화 번호, 1-800-345-VOTE가 포함됩니다;
- ◆ 장애인 및 소수계 언어 사용 커뮤니티의 유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2002년 전주 선거에서 투표 연령 인구의 투표율이 37 퍼센트 미만이었다는 사실이 증명하듯이, 아직도 할 일은 많습니다. 저희가 다시 유권자들을 투표에 참가시키기 위해서는 선거 시스템의 무결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AVA는 적절히 시행하면 유권자들을 선거 절차에 다시 참가시키려는 캘리포니아 주의 노력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선거 개혁에 관한 최근의 공청회에서 한 저명한 논평가가 지적했듯이 HAVA를 Hurt America Vote Act(미국 투표 손상법)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참으로, HAVA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모든 유권자가 "나의 투표가 소중한다"고 말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접근 가능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절차로 시행할 수 있고 또 시행할 것입니다.

HAVA는 적절히 시행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 ◆ 신체 장애인과 영어가 부족하거나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 가정, 상점가와 다른 공공 장소에서 비밀로, 안전하게, 그리고 독자적으로 투표;
- ◆ 모든 선거담당관과 선거관리인이 철저한 교육을 받고, 모든 유권자가 존경과 예의로 정중하게 대우 받고 쉽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 ◆ 모든 유권자에게 입후보자, 법안 및 투표 절차에 관한 서면 및 구두 정보를 쉽고 정확한 용어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
- ◆ 유권자들에게 투표 전후와 투표할 때 유권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
- ◆ 유권자 등록을 온라인으로 제공;
- ◆ 사용하기 쉽고 유권자의 의사를 결함없이 기록 및 전달하는 투표기를 설치;
- ◆ 젊은 층의 유권자들이 유권자, 선거관리인 및 참관인으로 선거 절차에 참가하고, 투표 절차에 관한 교육을 일찍부터 받기 시작;
- ◆ 모든 유권자가 선거일에 적절한 형식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캘리포니아 주 또는 다른 해당 선거관할구의 선거구에서 투표;
- ◆ 해외유권자와 군인유권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투표;
- ◆ 유권자가 선거일에 투표소에 나오면 반드시 실제 또는 임시투표의 기회를 제공;
- ◆ 선거일 이전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일에 등록 기회 제공;
- ◆ 안전하고 일상화된 인터넷 및/또는 전화 투표.

HAVA는 적절히 시행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추가로 개혁을 실시할 기회가 됩니다. 지금은 기회를 잡을 때입니다--캘리포니아 주는 HAVA를 활용하여 투표 절차의 무결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투표 참가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소중한 나의 투표"는 슬로건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 투표의 본질을 표현한 캐치프레이즈이어야 합니다.

## 개요

캘리포니아 주 계획은 HAVA 제255(a)조에 따라 주무장관인 Kevin Shelley가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한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주 계획 자문위원회("위원회")가 작성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계획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약력은 37 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위원회는 몬트레이파크(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프레즈노 및 새크라멘토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알리기 위해 거의 4,000명에 달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과 단체에 통지서를 우송하고, Los Angeles Times, San Diego Union-Tribune, San Francisco Chronicle, Sacramento Bee, Fresno Bee, 및 La Opinion-스페인어-에 통지문을 게재하고, 주무장관 웹사이트에 일곱 가지 다른 언어로 통지문을 게시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들에게 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연락했습니다.

공청회는 전사(transcription)하고,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고, 오디오테이프에 녹음하고, 회의록과 요약본으로 문서화되었습니다. 하나 이상의 공청회에 중국어(표준 중국어 및 광둥어), 일본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스페인어 및 베트남어 통역이 제공되었습니다. 하나 이상의 공청회에 청각 및/또는 시각 장애자를 위해 오디오 헤드셋이 제공되었습니다. 모든 공적 절차는 미국 수화로 통역되었습니다. 모든 공청회는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장애인 보호법)를 준수하는 시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선거 개혁 및 HAVA 시행과 관련된 250여 건의 구두 또는 서면 의견을 공청회에서 수령하거나,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또는 직접 전달 방법을 통해서 접수했습니다. (공청회의 구성원들은 hava@ss.ca.gov로 전자우편을 보냄으로써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접수한 의견은 위원회 위원들이 검토했습니다.<sup>7</sup> 그 후에, 위원들은 2003년 5월 27일에 새크라멘토에서 회의를 열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HAVA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 위원들은 주무장관에게 주 계획의 내용에 관한 추천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추천 사항은 캘리포니아 주 예비계획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2003년 6월 17일에, 주 예비계획은 새크라멘토의 주무장관실에서 공중 심사에 회부되었고 그 결과를 공고했습니다. 그 후에, 이 계획은 프레즈노,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및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주무장관실 지역 사무소에서 공중 심사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예비계획을 공중 심사와 의견 청취를 위해 2003년 7월 17일 까지 공개한다는 것을 발표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예비계획의 사본은 주무장관실 웹사이트(www.ss.ca.gov)에 영어와 스페인어로 게시했습니다. 주 예비계획의 사본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과 단체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주 예비계획에 관한 의견은 우편, 직접 전달, 팩스 및 전자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sup>8</sup> 모든 의견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예비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에 주무장관은 캘리포니아 주 계획을 Federal Register(연방 관보)에 45일 동안 공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제254(a)조는 주 계획에 13개 요소 각각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각 요소는 다음 페이지들에 기술된 된 것처럼 캘리포니아 주 계획에서 "장"으로 취급됩니다



# 제1장: 제III편의 요건을 준수

## 제254(a)(1)조, 72 페이지<sup>9</sup>

캘리포니아 주가 제III편<sup>10</sup>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제251(a)(2)조에 의해 선거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다른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 요건지불금(requirements payment)을 사용하는 방법.

제301 조(96 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되는 제III편은 "통일 비차별 선거 기술 및 관리 요건(Uniform and Non-Discriminatory Election Technology and Administration Requirements)"에 대해 기술합니다.

다음은 HAVA 제III편의 요건과 캘리포니아 주가 이 연방법을 준수하기 위해 요건지불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제305조(124 페이지)에 따라 제III편의 요건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은 각 주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 A. 투표시스템 기준

제301(a)조, 96-102 페이지

#### 연방법

HAVA는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연방선거에서 사용되는 각 투표시스템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 투표 오류

투표시스템은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전에 선택한 투표 대상을 비공개 및 독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고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전에 투표용지를 변경 또는 정정하는 것(투표용지의 교체 포함)을 허용해야 합니다.

투표시스템이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전에 선택한 투표 대상을 확인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건을 HAVA의 새로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종이 투표용지 투표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 과투표 및 정정에 대해 유권자에게 통지

투표시스템은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 유권자가 과투표(overvote, 허용된 것보다 더 많은 입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를 했다는 것을 통지;
- 유권자에게 과투표의 결과(즉, 그 공직에 대한 투표가 집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를 통지;
- 과투표를 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정정할 기회를 제공.

#### 종이 양식을 사용하는 투표시스템의 요건 준수

부재자 투표시스템을 포함하는 종이 양식의 투표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유권자에게 과투표의 결과를 알려주는 투표시스템에 특정한 유권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투표하기 전에 투표용지를 정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제공(투표용지 교체 방법에 대한 설명 포함); 그리고
- 유권자의 투표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 투표시스템 감사 요건(98-99 페이지)

투표시스템은:

- 감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록용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기록용지는 재검표 목적을 위한 공식 기록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수작업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영구 기록용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영구 기록용지를 작성하기 전에 유권자가 오류를 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을 위한 투표 설비(99 페이지)

투표시스템은 시각 장애가 있는 유권자를 포함하는 장애인 유권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유권자와 동일하게 비공개 및 독자성을 보장하는 접근 및 참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각 투표소에 최소한 한 대의 DRE 투표 장치, 또는 장애인을 위한 장치를 장착한 다른 투표시스템을 제공해야 합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제III편에 의한 기금으로 구입한 모든 투표시스템은 위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대체 언어 제공(99 페이지)

투표시스템은 1965년의 Voting Rights Act(투표권법, 42 U.S.C. §1973aa-1a) 제203조에 규정된 대체 언어 제공과 관련된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오류율(100 페이지)

투표시스템은 HAVA를 제정한 날짜(2002년 10월 29일)에 발효된 투표시스템 오류율-유권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단지 시스템 결함에 의한 오류-에 대한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의 지침(제3.2.1조)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투표에 대한 정의(100 페이지)

각 주는 무엇이 투표를 구성하고 무엇이 주에서 사용하는 각종 투표시스템에 의해 유효 투표로 집계되는지를 정의한 통일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HAVA를 준수하는 투표시스템 기준

지역 선거담당관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선거 절차 개혁을 위해 주무장관에 의해 구성된 자문위원회 포함)과 협의하여, 그리고 제III편 부속편 B에 따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채택한 자발적인 지침을 고려한 후에, 캘리포니아 주는 규제, 입법, 투표시스템의 인가 및 인가 취소 절차, 또는 다른 조치를 통해서 HAVA를 준수합니다(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투표시스템의 교체 포함). 투표 절차의 무결성을 회복하고,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할 기회를 증가시키고, HAVA를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는 최고선거책임자<sup>11</sup>인 주무장관의 지휘 아래, 그리고 위에 언급한 자문을 받아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 직접 기록 전자식(DRE/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캘리포니아 주의 투표소에서 사용), 그리고 우편투표에 대한 도표 작성에 사용하고 순위투표(ranked ballot) 및 누적투표(cumulative voting)와 같은 대체 투표 방법에도 사용할 수 있는 광학스캔시스템의 사용을 지원, 촉진 및 장려;
- 주법 및 연방법을 준수하는 새 DRE 투표시스템의 신속한 인가;
- 주무장관에게 투표시스템의 인가 및 인가 취소를 추천하는 기존의 투표시스템위원회(Voting Systems Panel)를 통해서 HAVA에 규정된 투표시스템 기준 및 시스템 감사 요건을 개발하고, 이러한 기준의 변경을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절차를 제정하고, 이러한 기준이 각 투표시스템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지 확인;
- HAVA 제301(a)(1)(B)조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유권자 교육 자료를 제작 및 배포;

- 선거 절차 개혁을 위해 주무장관에 의해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 제301(a)(3)(B)조에 따라 각 캘리포니아 주의 투표소에서 최소한 한 대의 DRE/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을 사용하고 투표시스템 자체를 장애인 유권자가 출입할 수 있는 투표소에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는 장애인에 대한 투표장치 사용 및 비공개 요건의 준수를 확인.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한 활동에는 투표소를 점검하여 출입 및 설비의 사용 가능성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모든 유권자의 권리에 대해 선거담당관, 선거관리인 및 유권자에게 교육을 실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주무장관은 확립된 절차를 통해서 직접투표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어렵거나, 장애인 유권자에게 오류를 유발하기 쉽거나, 또는 동등한 투표 참가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종이 양식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인가를 취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무장관은 지역 선거담당관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선거 절차 개혁을 위해 주무장관에 의해 구성된 자문위원회 포함)과 협의하여 제301(a)(3)(B)조(각 투표소에 단 한 대의 DRE 투표시스템을 설치하면 사용 적합성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접투표시스템을 변경하는 마감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 1965년 Voting Rights Act의 요건에 따라 모든 투표시스템이 대체 언어를 제공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 주무장관은 확립된 절차를 통해서 직접투표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어렵거나, 언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유권자에게 오류를 유발하기 쉽거나, 또는 동등한 투표 참가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종이 양식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인가를 취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확립된 절차를 통해서 순위투표 및 누적투표시스템과 같은 대체 투표시스템을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는 투표시스템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고려;

- ◆ 투표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오류율, 신뢰성 및 정확성 요소, 장애인이거나, 언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문맹인 유권자에 대한 사용의 적합성 및 대체 투표시스템의 제공 능력을 확인; 지역 선거담당관과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투표시스템을 개선;
- ◆ 규정 및/또는 법령을 통해서 무엇이 투표를 구성하고 무엇이 주에서 사용하는 각종 투표시스템에 의해 유효 투표로 집계되는지를 정의한 통일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정.

## B. 임시투표

제302조, 102-104 페이지

### 연방법

제302(a)조(102 페이지)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모든 연방선거에서 "임시투표"를 허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HAVA에 의하면, 유권자의 이름이 공식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거나, 또는 선거담당관이 유권자가 투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유권자는 다음과 같이 임시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 ◆ 투표소의 선거담당관이 유권자에게 임시투표 옵션에 대해 알려줍니다;
- ◆ 유권자는 본인이 그 선거관할구의 등록유권자이므로 투표할 자격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 투표한 투표용지나 확인서에 기재된 정보를 해당 주 또는 지역 선거담당관에게 신속하게 전송하여 확인합니다;
- ◆ 정보가 확인되면 투표가 집계됩니다;
- ◆ 투표를 할 때, 개인의 투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여 투표를 한 유권자만이 본인의 투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접근 시스템을(예를 들면, 안전하고 비밀이 유지되는 전화 또는 인터넷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합니다;
- ◆ 주 또는 지역의 선거담당관은 무료 접근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HAVA는 연방 또는 주의 명령에 따라 정상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 투표한 유권자의 임시투표를 정상 임시투표와 분리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제302(c)조, 106 페이지).

## HAVA의 임시투표 요건 준수

지역 선거담당관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선거 절차 개혁을 위해 주무장관에 의해 구성된 자문위원회 포함)과 협의하여, 그리고 제III편 부속편 B에 따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채택한 자발적인 지침을 고려한 후에, 캘리포니아 주는 규제, 입법 절차, 또는 다른 조치를 통해서 임시투표 요건을 포함하는 HAVA를 준수합니다. 투표 절차의 무결성을 회복하고,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할 기회를 증가시키고, HAVA를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는 최고선거책임자<sup>12</sup>인 주무장관의 지휘 아래, 그리고 위에 언급한 자문을 받아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 ◆ HAVA가 요구하는 임시투표와 다른 일반적인 투표에 대해 통일된 정보 및 절차를 제공하고, 선거담당관, 선거관리인 및 유권자들이 임시투표에 대한 권리와 절차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제공;
- ◆ 장애인들이 가능한 한 혼자서 투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임시투표시스템을 설계;
- ◆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유권자가 신원확인 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진술서에 서명함으로써 투표소에서 임시투표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제정;
- ◆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임시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입수한 정보가 임시투표 신청인이 투표 등록을 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사람이 임시투표를 원하거나 또는 그러한 투표를 하는 선거구에서 투표할 자격이 없다고 결정되더라도 향후의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을 주는 절차를 제정;
- ◆ 임시투표가 California Elections Code(캘리포니아 선거법) 제14310조 또는 주법의 다른 해당 조항(들)에 규정된 확인 절차를 준수한 경우, 이를 집계하는 절차를 제정;
- ◆ 서명 변경, 신체 장애 또는 다른 상황으로 인해 신원을 서명에 의해 적절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서명 확인 방법을 강구;



- HAVA 제302(a)조에 규정된 확인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California Elections Code 제14310조 또는 다른 해당 조항(들)을 개정하는 입법을 발의하는 것을 고려;
- 어떤 사람이 잘못된 선거구에서 또는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잘못된 종류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임시투표를 했더라도 그 사람이 투표할 자격이 있는 입후보자와 법안에 대해 그 사람의 임시투표용지를 집계하도록 California Elections Code 제14310(c)(4)조 또는 다른 해당 조항(들)을 개정하는 입법을 발의하는 것을 고려;
- "임시투표"라는 명칭을 중요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용어로 변경하는 입법을 발의하는 것을 고려;
- 지역 선거담당관과 협조하여, 임시투표 유권자 본인 투표의 집계 여부, 그리고 집계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하고 비밀이 유지되는 무료 접근시스템을 설치 또는 설치를 감독하거나, 또는 임시투표를 한 모든 사람이 그 투표의 집계 여부, 그리고 집계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사유와 같은 투표의 처리 상태를 통지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정;
- 법원 명령에 따라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 투표한 투표용지는 임시투표로 간주되고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 제정;
- Voting Rights Act (42 U.S.C. §1973aa-1a) 제203조의 준수를 보장.

## C. 유권자 정보 요건

제302(b)조, 104-106 페이지

### 연방법

제302(b)조(104-105 페이지)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연방선거에 대해 선거담당관이 다음을 포함하는 지정된 투표정보를 선거일에 각 투표소에 게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 그 선거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 견본;
- 선거 날짜 및 투표소 개장 시간;
- 투표에 대한 설명문(임시투표에 관한 설명문 포함);
- 우편등록자 및 최초투표자에 대한 설명문;
- 일반적인 투표권에 관한 정보(임시투표를 할 권리와 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문을 포함);
- 사기 및 허위진술에 대한 법적 금지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 HAVA의 투표 정보 요건 준수

지역 선거담당관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선거 절차 개혁을 위해 주무장관에 의해 구성된 자문위원회 포함)과 협의하여, 그리고 제III편 부속편 B에 따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채택한 자발적인 지침을 고려한 후에, 캘리포니아 주는 규제, 입법 절차, 또는 다른 조치를 통해서 임시투표 요건을 포함하는 HAVA를 준수합니다. 투표 절차의 무결성을 회복하고,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할 기회를 증가시키고, HAVA를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는 최고선거책임자<sup>13</sup>인 주무장관의 지휘 아래, 그리고 위에 언급한 자문을 받아 아래의 권리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투표정보를 적절한 언어로 작성하여 투표소와 다른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고 적절한 커뮤니티에서 발행하는 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에 인쇄할 것을 부분적으로 고려합니다:

- 손상된 투표용지를 바꿀 권리;
- 법적으로 신원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권리;
-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권리;
- 특정한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투표용지 기입 장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권리;
- 부재자투표용지를 카운티의 모든 투표소에 제출할 권리;
- 특정한 상황에서 유급으로 직장을 쉴 권리;
- 특정한 상황에서 임시투표를 하고 그 투표의 집계 여부와 집계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권리;
- 민감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접근 및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권리.

또한, 캘리포니아 주는 선거담당관이 투표소에 게시한 정보에 HAVA가 게시하도록 요구한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과 장애인, 언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문맹인 사람들을 포함하여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표소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장합니다.

## D. 전주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 요건

제303조, 106-111 페이지

### 연방법

제303조(106 페이지)는 최고선거책임자인 주무장관이 2004년 1월 1일<sup>14</sup>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합법적으로 등록한 모든 유권자의 이름과 등록 정보가 들어있고 그러한 각 유권자에 대해 고유한 식별번호를 지정한 통일되고, 공식적이고, 중앙집중식이고, 대화식이고, 전산화된 단일 유권자 등록 리스트를 통일되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작성하고 이를 주정부 수준에서 규정, 유지 및 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산화된 리스트는:

- 연방선거에 사용하는 공식 유권자 등록 리스트입니다;
- 공식 리스트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단일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 모든 등록 유권자의 이름과 등록 정보를 포함합니다;
- 각 유권자의 고유한 식별번호(운전면허증 번호, 소셜 시큐리티 번호의 일부분, 또는 다른 지정된 번호)를 표시합니다;
- 다른 주정부 데이터베이스(교정부, 보건서비스부, 차량국, 기타 주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및 소셜 시큐리티)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선거담당관이 즉시, 전자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경우, 지역 선거담당관이 전자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주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공식 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관리합니다:

- NVRA(전미 유권자 등록법)에 따라 유권자의 이름을 삭제합니다(42 U.S.C. §1973gg, 8, (a)(4), (c)(2), (d) 및 (e)조);
- 중범자 신분(42 U.S.C. §1973gg, 6(a)(3)(B)); 사망(6(a)(4)(A))의 경우 NVRA에 따라; 또는 주법에 따라 무자격 유권자를 삭제합니다;
- 각 등록 유권자의 이름을 리스트에 표시합니다;
- 무자격 유권자 또는 비등록 유권자만을 리스트에서 삭제합니다;
- 중복된 이름을 리스트에서 삭제합니다;
- 유자격 유권자들이 오류에 의해 삭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NVRA (42 U.S.C. §1973gg, 이하)에 따라 무자격 유권자를 삭제하기 위한 다른 타당한 조치를 취하며, 여기에는 투표통지서에 회신하지 않고, 연방 공직자를 선출하는 총선거에서 2회 연속 투표하지 않은 등록유권자를 공식 유자격 유권자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것이 포함되나, 단지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유권자를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 HAVA의 전주 데이터베이스 요건 준수

지역 선거담당관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선거 절차 개혁을 위해 주무장관에 의해 구성된 자문위원회 포함)과 협의하여, 그리고 제III편 부속편 B에 따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채택한 자발적인 지침을 고려한 후에, 캘리포니아 주는 규제, 입법 절차, 또는 다른 조치를 통해서 임시투표 요건을 포함하는 HAVA를 준수합니다. 투표 절차의 무결성을 회복하고,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할 기회를 증가시키고, HAVA를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는 최고선거책임자<sup>15</sup>인 주무장관의 지휘 아래, 그리고 위에 언급한 자문을 받아 적절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현재의 캘리포니아 전주 데이터베이스(Calvoter)를 HAVA를 준수하도록 변경하거나 또는 HAVA를 준수하는 새 전주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 것이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다음 사항을 추진합니다:

- 주정부 수준에서 규정, 유지 및 관리하는 통일되고, 공식적이고, 중앙집중식이고, 대화식이고, 전산화되고, 안전한 단일 전주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지원하고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제정, 운영 및 시행;
- 주 교정부(중범자 신분의 유권자에 대한 기록 제공); 주 보건서비스부(사망한 유권자에 대한 기록 제공); 차량국(운전면허증, 캘리포니아 주 신분증 및 소셜 시큐리티 번호 정보 확인);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장애, 공공 복지, 학생 및 기타 커뮤니티에 대한 기록과 같은 다른 적절한 데이터베이스와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
- 지역 선거담당관이 즉시 유권자 등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
- 주정부 직원 및 다른 시각장애인들이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사용할 있도록 설계되었고 시각장애인들이 개발 과정에 가능한 한 조기에 참여하여 시험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

- ◆ 연방선거에서 공식 유권자 등록 리스트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
- ◆ 명백하게 투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삭제하고, 유자격 유권자들이 오류에 의해 등록 리스트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
- ◆ 유권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통일된 방법으로, 최대한 신중하고 정확하게 확인(특히 처음에 유권자가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하는 것을 보장하는 지침과 절차를 개발;
- ◆ 주정부가 유자격 유권자 리스트에서 삭제를 고려 중인 유권자에게 이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것에 관한 모든 연방법 및 주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침과 절차를 개발;
- ◆ 전주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실시할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고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1) 유권자를 등록 리스트에서 무자격 유권자로 삭제하기 전에 유권자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 그리고 (2) 연방법과 주법의 통지 요건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
- ◆ 자격의 변경이나 미등록, 또는 개인을 무자격 유권자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그 개인에게 해명 또는 정정 정보를 제출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개인에게 통지하는 종합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입법 발의 고려;
- ◆ 지역 선거담당관에게 전주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
- ◆ 데이터베이스와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을 것을 보장;
- ◆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및 이 시스템과 인터페이스하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유권자에 관해 입수한 정보의 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일된 보호 규정을 제정;
- ◆ Voting Rights Act (42 U.S.C. § 1973aa-1a) 제203조의 준수를 보장.

## E. 유권자 등록 정보 확인 요건

제303조, 111-117 페이지

### 연방법

제303(a)(5)조(111 페이지)는 연방선거에 대한 유권자 등록 신청서와 관련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또는 2006년 1월 1일<sup>16</sup>부터 특정한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신청서는 현재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신청인의 경우 운전면허증 번호;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릿수를 기재해야 접수 또는 처리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현재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주정부가 고유한 신원확인 번호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정부가 전산화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산화된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부여한 번호를 고유한 신원확인 번호로 사용합니다.

주정부는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의 일부(마지막 네 자릿수)-가 HAVA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무장관은 차량국과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차량국은 소셜 시큐리티 국장과 약정을 체결하여 유권자 등록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 특히 다음과 같은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신청인의 이름-이름과 성;
- ◆ 신청인의 생년월일;
- ◆ 신청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 ◆ 그러한 기록에 신청인이 사망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예를 들면, 개인의 안전이나 수사에 대한 방해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HAVA의 유권자 등록 정보 확인 요건 준수

지역 선거담당관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선거 절차 개혁을 위해 주무장관에 의해 구성된 자문위원회 포함)과 협의하여, 그리고 제III편 부속편 B에 따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채택한 자발적인 지침을 고려한 후에, 캘리포니아 주는 규제, 입법 절차, 또는 다른 조치를 통해서 임시투표 요건을 포함하는 HAVA를 준수합니다. 투표 절차의 무결성을 회복하고,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할 기회를 증가시키고, HAVA를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는 최고선거책임자<sup>7</sup>인 주무장관의 지휘 아래, 그리고 위에 언급한 자문을 받아 이 주가 연방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 등록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HAVA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주무장관은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 ◆ 캘리포니아 주 차량국이 발급한 주 신분증 번호가 운전면허증 번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
- ◆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역 선거담당관이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류를 정정하거나 누락된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절차와 규정을 제정;
- ◆ 입법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지역 선거담당관과 유권자에게 유권자 등록 양식을 적절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

## F. 우편으로 등록하는 특정 유권자에 대한 특별 요건

제303조, 117-124 페이지

### 연방법

2004년 1월 1일부터는(124 페이지), 유권자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우편으로 선거관할구에 투표등록을 했고, 전에 그 주의 연방 공직자 선거에서 투표한 적이 없는 경우, 또는 그 선거관할구에서 실시된 연방 공직자 선거에서 투표한 적이 없고 그 선거관할구가 HAVA를 준수하는 전산화된 전주 유권자 등록 리스트가 없는 주에 있는 경우, 주정부는 통일되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등록유권자에게 연방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거주지에 대한 증빙을 요구합니다.

유권자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고,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경우, 이러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려면 해당 선거담당관에게 사진이 부착된 현재 유효한 신분증, 또는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표시된 다음의 문서 중 하나의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 최근의 유틸리티 청구서;
- ◆ 은행 거래 명세서;
- ◆ 정부 수표;
- ◆ 정부 급여 수표;
- ◆ 정부 문서.

유권자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고, 우편으로 투표-부재자 투표-하는 경우, 이러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려면 해당 선거담당관에게 투표용지와 함께 사진이 부착된 현재 유효한 신분증의 사본, 또는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표시된 다음의 문서 중 하나의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 최근의 유틸리티 청구서;
- ◆ 은행 거래 명세서;
- ◆ 정부 수표;
- ◆ 정부 급여 수표;
- ◆ 정부 문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유권자가 직접 투표를 하는 경우 필요한 거주지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임시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부재자 투표-를 하는 경우 필요한 거주지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우송한 투표용지가 임시투표용지로 처리됩니다.

## 예외사항

제 303(b)(3)조, 119 페이지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거주지에 대한 증빙을 제공해야 하는 요건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유권자가 NVRA(42 U.S.C. §1973gg-4)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권자 등록의 일부로 사진이 부착된 현재 유효한 신분증의 사본, 또는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표시된 다음의 문서 중 하나의 사본을 제출한 경우:
  - ◆ 최근의 유틸리티 청구서;
  - ◆ 은행 거래 명세서;
  - ◆ 정부 수표;
  - ◆ 정부 급여 수표;
  - ◆ 정부 문서.

2. 유권자가 NVRA(42 U.S.C. §1973gg-4)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권자 등록(신청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같은 정보를 주 정부가 확인)의 일부로 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의 최소한 마지막 네 자릿수를 제출한 경우.
3. 유권자가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군인 및 해외국민 부재자 투표법, 42 U.S.C. §1973ff-1 이하)에 따라 부재자 투표를 할 자격이 있는 경우.
4. 유권자가 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고령자 및 장애인 투표 접근법, 42 U.S.C. §1973ee-1) 제3(b)(2)(B)(ii)조에 따라 직접투표 이외의 방법으로 투표할 자격이 있는 경우.
5. 유권자가 연방법에 따라 직접투표 이외의 방법으로 투표할 자격이 있는 경우.

## HAVA의 우편으로 등록하는 특정 유권자에 대한 특별 요건 준수

지역 선거담당관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선거 절차 개혁을 위해 주무장관에 의해 구성된 자문위원회 포함)과 협의하여, 그리고 제III편 부속편 B에 따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채택한 자발적인 지침을 고려한 후에, 캘리포니아 주는 규제, 입법 절차, 또는 다른 조치를 통해서 임시투표 요건을 포함하는 HAVA를 준수합니다. 투표 절차의 무결성을 회복하고,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할 기회를 증가시키고, HAVA를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는 최고선거책임자<sup>8</sup>인 주무장관의 지휘 아래, 그리고 위에 언급한 자문을 받아 HAVA의 우편으로 등록하는 특정 유권자에 대한 특별 요건을 준수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 선거담당관, 선거관리인 및 유권자들이 어떤 유권자들이 신원확인 요건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보장; 신원확인의 신청, 검토 및 처리 절차를 이해하고, 해당되는 유권자에게 임시투표를 할 권리에 대해 통지;

- ◆ 신원확인 요건을 제303(b)(1)조에 규정된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 즉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우편으로 등록하고, 그 선거관할구의 연방 공직자 선거에서 전에 투표한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sup>19</sup>
- ◆ HAVA 제303조의 목적상 "우편 등록"을 등록유권자가 선거담당관에게 우송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유권자 등록 카드를 선거담당관이 접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 ◆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연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발적인 지침을 공표한 것에 상관 없이, 유권자, 지역 선거담당관 및 선거관리인에게 제303(b)(2)(A)에 의해 허용되는 유효한 신원확인을 위해 어떤 양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통일되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HAVA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원 확인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그러한 법률 조항을 광의로 해석하고, 그러한 설명을 상세하게 기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이 조항에 참조로 표시;
- ◆ 신원확인 요건의 불법적인 적용을 신고하기 위해 핫라인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원확인 조항의 적용을 감시;
- ◆ Voting Rights Act(42 U.S.C. §1973aa-1a) 제203조의 준수를 보장.

## G. 우편등록 양식 요건

제303(b)(4)조, 121-122 페이지

### 연방법

NVRA(42 U.S.C. §1973gg-4) 제6조에 의해 작성된 유권자 등록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신청인이 미국 국민이고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지를 묻는 질문;
- ◆ 문구: "위의 두 가지 질문 중 하나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이 양식을 작성하지 마십시오;"
- ◆ 최초로 등록하는 유권자가 양식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투표할 때 거주지에 대한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편등록 시 그러한 정보(거주지를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의 일부)를 제공해야 한다고 신청인에게 알리는 문구.

신청인이 "귀하는 미국 국민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사무소는 신청인에게 양식을 완전히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청인에게 양식을 마감일 전에 완전히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HAVA의 우편등록 양식 요건 준수

지역 선거담당관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선거 절차 개혁을 위해 주무장관에 의해 구성된 자문위원회 포함)과 협의하여, 그리고 제III편 부속편 B에 따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채택한 자발적인 지침을 고려한 후에, 캘리포니아 주는 규제, 입법 절차, 또는 다른 조치를 통해서 임시투표 요건을 포함하는 HAVA를 준수합니다. 투표 절차의 무결성을 회복하고,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할 기회를 증가시키고, HAVA를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는 최고선거책임자<sup>20</sup>인 주무장관의 지휘 아래, 그리고 위에 언급한 자문을 받아 HAVA 제303(b)(4)조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통일되고 비차별적인 절차를 제정합니다.

## H. 제III편의 준수 목적 이외의 요건지불금의 사용

제251(b)조(65-66 페이지)는 제III편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요건지불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나, 주정부가 제III편의 요건을 시행했거나 또는 선거관리를 위한 다른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 제252(c)조(68 페이지)에 의해 그 주에 해당되는 최소 지불 금액(해당 연도에 요건지불금으로 지출한 총액의 0.5 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정부는 그러한 다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건지불금을 사용할 수 있다.

## HAVA의 제III편의 준수 목적 이외의 요건지불금의 사용 준수

지역 선거담당관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선거 절차 개혁을 위해 주무장관에 의해 구성된 자문위원회 포함)과 협의하여, 그리고 제III편 부속편 B에 따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채택한 자발적인 지침을 고려한 후에, 캘리포니아 주는 규제, 입법 절차, 또는 다른 조치를 통해서 임시투표 요건을 포함하는 HAVA를 준수합니다. 투표 절차의 무결성을 회복하고,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할 기회를 증가시키고, HAVA를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는 최고선거책임자<sup>21</sup>인 주무장관의 지휘 아래, 그리고 위에 언급한 자문을 받아 제251(b)조(65-66 페이지)에 의해 사용 가능한 기금을 캘리포니아 주의 연방공직 선거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출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 제2장: 요건지불금의 분배

### 제254(a)(2)장, 72-73 페이지

캘리포니아 주가 다음을 포함하는 제 1요소(제 1장)에서 설명한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 요건지불금을 지방정부 또는 주의 다른 단체에 분배하고 모니터하는 방법: 그러한 활동단위 또는 기관의 요건지불금 수령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 그리고 주정부가 제8요소(제8장)에서 채택한 성과목표 및 측정기준에 따라 요건지불금을 분배 받은 활동단위 또는 기관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HAVA에 의해 제공되는 요건지불금은 제251(b)(2)조의 규정에 따라, 또는 HAVA가 허가하는 다른 방법에 따라 앞의 제1장에서 설명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최고선거책임자인 주무장관은 지역 선거담당관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그리고 제III편 부속편 B에 따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채택한 자발적인 지침을 고려한 후에 지방정부 및 다른 단체에 요건지불금을 분배하고 모니터하는 절차를 수립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무장관은 기금의 분배에 관한 자문과 추천을 받기 위해 지역 선거담당관 및 다른 개인과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주무장관은 자문위원회의 조언과 추천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 ◆ 신청서 양식과 처리 방법을 포함하는 기금 수령 절차를 수립;
- ◆ 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개인과 단체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기금 분배 기준을 결정;

- ◆ 이러한 기금의 사용을 모니터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 목표와 측정기준을 결정하고, 기금을 제III편의 규정과 기금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주무장관이 채택한 성과목표 및 측정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무장관에 정기보고서와 회계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
- ◆ 일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시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연락하고, 다른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기금 신청, 성과목표 및 측정기준, 기금 분배 절차에 관한 기타 정보를 공지.

## 제3장: 유권자 교육, 선거담당관 교육 및 선거관리인 교육

### 제254(a)(3)조, 73 페이지

캘리포니아 주가 제III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가 유권자 교육, 선거담당관 교육 및 선거관리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

최고선거책임자인 주무장관은 지역 선거담당관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그리고 제III편 부속편 B에 따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채택한 자발적인 지침을 고려한 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1. 주무장관실에 지역 선거담당관과 유권자를 교육하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현장지원(outreach) 및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 ◆ 제III편의 목표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지원;
  - ◆ 유권자 교육을 조정하는 "정보센터"의 역할 수행;
  - ◆ 선거담당관과 유권자를 교육하기 위해 커뮤니티 단체, 근로자 단체, 대학 단체 및 이와 유사한 단체들과 협력하고 선거담당관에게 이러한 단체들과 협력할 것을 권장;
  -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공고문을 포함하는 선거관리인 총원 및 유권자 교육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 공고문의 제작 및 공고;
  - ◆ 투표 절차에 참가하는 절차에 관한 자료들을 고령 유권자, 장애인 유권자, 언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유권자 및 문맹인 유권자에 적합하게 제작 및 배포하거나 배포에 협조;
  - ◆ 투표 절차에 관한 웹사이트 및 웹사이트 템플릿을 디자인, 게시 및 배포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 청장년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투표 참가의 중요성과 절차에 관해 교육;
  - ◆ 복역을 마쳤거나 가석방 중인 중범자를 포함하는 모든 유자격 주민에게 투표와 관련된 절차를 교육;
  - ◆ 캘리포니아 주 차량국을 포함하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유권자들이 쉽게 등록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능률화;
  - ◆ 투표 등록 및 투표를 잘못된 개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그러한 잘못을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정;
  - ◆ 현장지원 및 교육에 사용할 민간 기금을 요청;
  - ◆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하는 투표소 위치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
  - ◆ 선거일 등록, 주말 투표 및 선거일 휴일(Election Day Holiday) 투표를 포함하는 투표 절차에 쉽게 참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서를 모집;
  - ◆ 조기투표 및 인근투표센터(neighborhood voting centers)의 추진 고려;
  - ◆ 선거담당관과 유권자에게 투표 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른 모든 적절한 조치를 시행;



2. 기금 분배 절차를 통하여, 카운티 선거담당관, 그리고 커뮤니티 단체, 근로자 단체, 대학 단체 및 이와 유사한 단체들을 포함하는 다른 단체에 기금을 제공하여 유권자 교육, 선거담당관 교육훈련 및 선거관리인 교육을 지원;
3. 지역 선거담당관과 협력하여 선거담당관과 선거관리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인증을 제공하는 "선거 아카데미"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설립을 고려;
4. 지역 선거담당관과 협력하여 선거담당관과 선거관리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인증을 제공하는 온라인, 대화식 교육 세미나의 실시를 고려하고, 이러한 세미나를 이중언어 선거관리인과 장애인 선거관리인을 포함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장;
5. 지역 선거담당관, 그리고 커뮤니티 단체, 근로자 단체, 대학 단체 및 이와 유사한 단체들과 협력하여 선거담당관과 선거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유권자에게 선거 절차에 참가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인쇄물, 웹사이트, 웹사이트 템플릿 및 DVD 비디오 또는 다른 적절한 미디어(고령 유권자, 장애인 유권자, 문맹 유권자 및 소수계 언어 사용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권자 안내서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를 적절한 언어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을 고려;
6. 주민들에게 선거 절차에 참가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무료 전화번호와 주무장관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장애인과 언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무료 전화번호와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직원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
7. 지역 선거담당관과 협력하여 투표장치 및 기타 선거절차에 관해 선거관리인을 교육 및 훈련시키기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근로자 프로그램, 대학 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설치(이에 대한 비용은 현장지원 및 교육 목적으로 분배되는 기금에 포함);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한 자격 기준에는 유권자 교육훈련과 선거관리인 총원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증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8. 개인과 단체들이 소수계 언어 사용 선거관리인과 장애인 선거관리인의 신원확인 및 총원을 포함하는 교육훈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 및 기준을 제정.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한 자격 기준에는 유권자 교육훈련 및 선거관리인 총원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증명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 프로그램에는 기금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평가방법이 포함됩니다;
9. 투표소, 인터넷 및 기타 장소에 사용할 선거절차 및 참가방법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들어있는 게시물을 적절한 언어로 작성. 주무장관은 이러한 게시물을 장애인, 언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및 문맹인 사람을 포함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10. 선거관리인에게 제공하는 교육에서 최소한 다음의 주제를 다루는 것을 보장:
  - ◆ 투표시스템 및 기술의 적절한 운영 및 유지보수;
  - ◆ 임시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의 권리, 임시투표용지의 적절한 처리 및 집계, 임시투표 유권자들이 투표의 집계 여부, 그리고 집계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 우편으로 등록하는 특정 유권자에 대한 HAVA 신원확인 요건의 비차별적인 적용;

- ◆ 정신 장애인을 포함하는 장애인 유권자를 확인하여 이러한 유권자들이 독자적, 비공개적으로 투표 절차에 완전히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
- ◆ 1965년 Voting Rights Act 제203조의 범위에 포함되는 선거관할구에 속한 소수계 언어 사용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언어에 대한 도움을 받을 권리;

11. 전술한 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유권자 교육에서 최소한 다음의 주제를 다루도록 권장:

- ◆ 투표등록 방법에 관한 정보;
- ◆ 유권자가 투표소 위치와 투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
- ◆ 부재자투표 및 조기투표와 같은 선거일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투표 방법에 관한 정보;
- ◆ 투표시스템과 투표기술의 적절한 사용;
- ◆ 임시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의 권리와 임시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의 집계 여부, 그리고 집계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 1965년 Voting Rights Act 제203조의 범위에 포함되는 선거관할구에 속한 소수계 언어 사용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언어에 대한 도움을 받을 권리;
- ◆ 이 주 계획에 설명되어 있는 불만 처리 절차와 무료 전화번호의 이용;

12. 장애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이 참가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주무장관실의 기존 현장지원 프로그램을 평가: College Guide(대학 안내서), Voter Registration Week's Education Day(유권자 등록 주간의 교육일), Vote America(미국의 투표), C.I.V.I.C.S. 프로그램, Shake the State(주 계몽) 웹사이트 및 Student/Parents Mock Elections(학생/학부모 모의선거).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젊은 유권자들에게 투표등록과 선거참가를 고취하는 것의 효과성을 결정합니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기존 프로그램의 변경을 제안하고 새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주무장관은 기존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18-24세에 속하는 유권자들의 낮은 참가율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신설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 제4장: 투표시스템 지침과 절차

### 제254(a)(4)조, 73 페이지

캘리포니아 주가 제301조의 요건에 부합하는 투표시스템 지침과 절차를 채택하는 방법.

주무장관은 기존의 주법에 따라 투표시스템 위원회를 통해서 투표시스템, 장치 및 사용절차를 인가합니다. 또한, 주무장관은 투표시스템, 장치 및 사용절차의 인가를 취소합니다. 인가되지 않은 투표시스템은 선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무장관은 기존의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제III편 부속편 B에 따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채택한 자발적인 지침을 고려한 후에, 투표시스템과 사용절차를 인가 및 인가 취소하여, 모든 투표시스템과 사용절차가 제301조 및 다른 HAVA 조항들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 제5장: HAVA 기금 관리

### 제254(a)(5)조, 73 페이지

캘리포니아 주가 기금 관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이 부에 의한 주정부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제(b)조에 규정된 기금을 설립하는 방법.

주무장관은 법령에 의해 설립된 "연방 신탁 기금" 내에 세 개의 독립적인 선거기금(관리절차 포함)을 관리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연방 신탁 기금 내의 각 부속계좌는 제I편-제101조, 제I편-제102조 및 제II편에 의한 기금의 보관소로 사용됩니다.

주무장관의 재정, 회계 및 예산 사무소는 주무장관의 지휘 아래 이러한 기금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합니다.

기금 관리는 재정 관리에 대한 연방법 및 주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제6조: 예산

### 제254(a)(6)조, 73-74 페이지

이 부(제II편, 부속편 D, 1부)에 의한 활동에 대해 다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그러한 활동의 비용에 대한 주정부의 최선의 추산과 기금 제공 금액에 근거하여 캘리포니아 주가 제안하는 예산:

- ◆ 제III편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활동에 대한 비용;
- ◆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될 요건지불금의 비율; 그리고
- ◆ 다른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될 요건지불금의 비율.

제공될 기금의 금액이 결정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할 자발적인 지침(제III편, 부속편 B, 125 페이지 이하)을 고려할 수 있고, 실제 시행 비용이 확인될 때까지 예산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금의 금액이 결정되고, 지침이 공표되고, 시행 비용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주무장관은 지역 선거담당관, 다른 공무원,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및 단체와 협의하여 자세한 예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특정한 역학관계와 변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예산 제안

제253(e)조의 규정에 의한 캘리포니아 주의 최고선거책임자인 주무장관은 수령한 모든 기금(이 기금에서 얻은 이자 포함, 제III편에 의해 할당된 제251(b)(2)(A) 및 (B)조에 기술된 기금은 제외)을 제III편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채택합니다.

주무장관은 제III편의 각 요건에 대해 "활동 유지(maintenance of effort)" 수준을 밝히고 HAVA 기금을 이미 기금이 제공된 활동을 이 법이 요구하는 활동으로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정부는 투표 장치의 현대화를 위한 기금을 조달하기 위해 \$2억 상당의 일반채무공채 발행을 허가했습니다. 카운티들은 이 기금을 사용하여 접근 가능한 투표장치를 구입 및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제253(b)(5)조의 상응기금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제III편에 의해 수령한 기금은 소송이나 판결금액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53(e)조의 규정에 의한 캘리포니아 주의 최고선거책임자인 주무장관은 이 법 제254(b)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기금을 관리합니다.

### 제III편과 관련된 특정 예산 구성요소

주무장관은 선거기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III편의 특정 요건에 대해 기금을 제공합니다:

### 투표시스템 기준

주무장관은 제301조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금을 할당합니다. 여기에는 주무장관이 제정한 할당기준에 따른 지역 행정관에 대한 기금 할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금의 수준은 조사 및 분석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 몇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투표시스템 비용에는 변동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선택한 기술(DRE 대 광학스캔, 선거구 기반 대 중앙집중식 시스템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선택은 지역 선거담당관이 결정합니다. 또한, 투표시스템 비용은 이러한 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과 투표소 당 한 대의 DRE를 구입할 것인지 또는 모든 투표시스템을 DRE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지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번째 예는 새 투표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투표소의 수를 지역 선거담당관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얻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장치를 개장(retrofitting)해야 한다는 연방기준 또는 주의 기준이 채택된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기금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무장관은 어떤 지역 선거관할구가 각 투표소에 최소한 한 대의 접근 가능한 투표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301(a)(3)조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금이 필요하거나 기금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제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약 25,000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주무장관은 모든 투표장치가 다음을 포함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제301조의 조항들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1)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전에 투표용지를 확인하거나 정정하는 것을 허용; (2) 과투표를 했다는 사실과 그 결과를 통지하고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전에 과투표를 정정할 기회를 허용; (3) 수작업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영구 기록용지를 작성; (4) 모든 투표시스템에서 시행된 투표에 대해 통일된 정의를 제공;

(5) 장애인의 사용 가능성을 보장; (6) 1965년 Voting Rights Act 개정법의 요구에 따라 소수계 언어 사용자의 사용 가능성을 보장; 그리고 (7) 연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채택한 "오류율" 지침을 충족.

이 구성요소의 비용을 예상해보면 \$4,260만에서 \$7,000만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비용은 이러한 예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구성요소에 최우선적으로 기금이 할당될 것입니다.

## 임시투표

캘리포니아 주법은 일반적으로 제302조의 요건을 준수하는 임시투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장관은 HAVA가 요구하는 모든 통지문을 제작하여 각 투표소에 게시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기금에서 기금을 지출합니다. 이외에도, 주무장관은 지역 선거담당관과 협력하여 유권자가 임시투표의 집계 여부, 그리고 집계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접근" 시스템(또는 시스템들)을 결정합니다. 또는, 주정부가 선행적인 어프로치를 택해서 임시투표 유권자에게 투표의 상태, 그리고 집계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사유를 미리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료 접근" 시스템이나 선행적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금은 시스템의 설계(인터넷, 전화 등),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자(하나의 주 시스템, 또는 58개의 지역 시스템), 그리고 필요한 정보에 대한 유권자의 조회량 또는 임시투표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통지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구성요소의 비용을 예상해보면 \$100만에서 \$300만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되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이러한 예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 투표정보

HAVA는 투표소에서 특정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투표용지 견본, 투표 날짜 및 시간, 투표 방법, 임시투표 방법, 투표를 하려면 신원확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최초 투표등록자의 투표절차, 유권자의 권리 리스트, 다른 법률에 관한 정보 및 유권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포함됩니다.

주무장관은 필요한 자료들을 작성하고, 배포하고 모든 투표소에 게시합니다.

이 구성요소의 비용을 예상해보면 \$10만에서 \$30만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비용은 이러한 예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 전주 데이터베이스

주무장관은 통일되고, 공식적이고, 중앙집중식이고, 대화식인 단일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이를 주정부 수준에서 규정, 유지 및 관리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연방선거에서 공식 유권자 리스트가 됩니다.

이 시스템의 설치는 주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전주 데이터베이스의 기능 요구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분석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이 요건에 할당될 기금의 금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에는 제303(a)(1)(A)(v)조가 요구하는 선거담당관에게 "즉시 전자식 접근"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과 문제에 대한 결정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다른 주정부 기관이 HAVA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운전면허증 번호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국과 연결 수립; (2) 중범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교정부와 연결 수립; 그리고 (3) 사망자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보건부와 연결 수립.

이외에도, 시스템이 결정된 후에, 주무장관은 제 303(a)(1)(A), 303(a)(1)(A)(vii) 및 303(a)(3)조를 포함하는 HAVA의 해당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보수, 지원, 보안 요건 및 이러한 요건과 관련된 비용을 결정합니다.

이 구성요소의 비용을 예상해보면 \$800만에서 \$4,000만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 비용이 많으므로 이러한 예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 우편등록 유권자에 대한 요건

주무장관은 제 303(b)조의 요건을 통일된 방법으로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제정합니다.

이 구성요소의 비용을 예상해보면 \$10만에서 \$30만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비용은 이러한 예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 유권자 교육

제254(a)조는 제III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유권자 교육에 제II편에 의한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주 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HAVA가 요구하는 변경사항과 새로운 절차는 평생 동안 투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경이 될 것이며, 이러한 변경사항을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선거절차 개혁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주무장관은 유권자 등록, 투표, 새 투표장치, 유권자의 권리 및 다른 적절한 주제에 관한 유권자 교육에 상당히 많은 기금을 할당합니다.

이러한 기금은 소수계 언어 사용 커뮤니티 및 장애인 커뮤니티에 대한 교육을 위해 제공됩니다. 주무장관은 투표에 참가하기 시작하는 젊은 유권자들에게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주무장관이 지출하는 기금 이외에도, 선거담당관, 개인, 단체 등에게 교육 목적의 기금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주무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할당됩니다.

현장지원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포함됩니다: 인쇄물, 라디오 및 텔레비전 공지, 우편, 호별방문, 커뮤니티 그룹 조직 및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커뮤니티 접촉 확대, 또는 교육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접촉하기 위한 다른 방법.

이 구성요소의 비용을 예상해보면 \$1,500만에서 \$4,500만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비용은 이러한 예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 선거담당관 교육

제254(a)조는 제II편에 의한 기금을 선거담당관 교육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주 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선거담당관들은 HAVA 개혁의 시행자이며 그들의 전문성과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은 성공적인 선거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주무장관은 예비 선거담당관을 교육하고 현재의 담당관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선거 아카데미 설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선거 아카데미에 필요한 기금은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구성요소의 비용을 예상해보면 \$1,500만에서 \$4,500만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 비용이 많으므로 이러한 예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 선거관리인 교육

제254(a)조는 제II편에 의한 기금을 선거관리인 교육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주 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선거관리인은 선거의 제일선에서 근무합니다.

주무장관은 지역 선거담당관의 선거관리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지출하고 할당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특히 투표장치의 적절한 운영, 적용되는 연방법 및 주법, 소수계 언어 사용 유권자 및 장애인 유권자의 특별한 필요, HAVA에 따른 임시투표, 우편으로 최초 등록을 하는 유권자에 대한 절차, 그리고 유권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이 구성요소의 비용을 예상해보면 \$1,500만에서 \$4,500만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 비용이 많으므로 이러한 예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 다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지불금의 비율

### 불만제기절차

제IV편, 402조, 126-128 페이지 주무장관은 제 402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불만제기절차를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금은 접수 및 처리할 불만의 종류와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기금은 요건지불금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구성요소의 비용을 예상해보면 \$10만에서 \$30만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 비용이 많으므로 이러한 예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 군인 및 해외국민의 투표권

제VII편, 702조, 145-146 페이지  
 HAVA는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42 U.S.C. §1973ff-1)  
 제102조를 개정하여 각 주가 연방선거와 관련하여  
 부재 군인 유권자 및 해외 유권자들이 사용할  
 유권자등록절차 및 부재자투표절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담당하는 단일 공직을 임명하는 요건을  
 추가합니다. 연방 공직에 대한 정기 총선거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구성요소의 비용을 예상해보면 \$10만에서  
 \$30만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비용은  
 이러한 예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 활동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과 비율의 요약

2003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주에 할당된  
 \$9,710만의 요건지불금<sup>22</sup>에 근거한 최선의 추정 분배  
 비용이 아래의 차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HAVA 요건	추정 비용	지불금 비율*
투표시스템 기준-제III편, 301(a)조	\$4억 2,600만-\$7,000만	43.87%
임시투표-제III편, 302(a)조	\$100만-\$300만	1.03%
유권자 정보 게시-제III편, 302(b)조	\$10만-\$30만	.1%
전주 데이터베이스-제III편, 303(a)조	\$800만-\$4,000만	8.24%
유권자 등록 정보 확인-제III편, 303(a)(5)조	\$10만-\$30만	.1%
특정 우편 등록 유권자 요건-제III편, 303(b)조	\$10만-\$30만	.1%
우편 등록 양식 요건-제III편, 303(b)(4)조	\$0	0%
유권자 교육-제III편	\$1,500만-\$4,500만	15.45%
선거담당관 교육-제III편	\$1,500만-\$4,500만	15.45%
선거관리인 교육-제III편	\$1,500만-\$4,500만	15.45%
불만제기절차(다른 활동)-제IV편, 402조	\$10만-\$30만	.1%
군인 및 해외국민의 투표권(다른 활동)-제VII편, 702조	\$10만-\$30만	.1%
<b>합계</b>	<b>\$97,100,000-\$249,500,000</b>	<b>\$97,100,000의 100%</b>

\*계속 발생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표시된 비용과 비율은 앞에서 언급한 변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변경이 예상되는 비용은 이 계획에 상세하게 기술된 것처럼 간주됩니다. 또한, 위에 표시된 "지불금  
 비율"은 최소 "추정 비용"에 근거한 것으로 최종 결정된 실제 비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 제7장: 활동의 유지

### 제254(a)(7)조, 74 페이지

캘리포니아 주가 요건지불금의 사용에 있어서 2000년 11월 이전에 종료된 회계연도에 주정부가 유지한 지출 수준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요건지불금으로 기금을 제공한 활동에 대해서 주정부의 지출을 유지하는 방법.

주무장관은 주정부의 예산결정과정과 요건지불금의 분배를 통해서 1999-2000 회계연도에 주정부가 유지한 지출 수준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요건지불금으로 기금을 제공한 활동에 대해서 주정부의 지출을 유지할 것을 보장합니다.

## 제8장: 성과목표 및 측정기준

### 제254(a)(8)조, 74페이지

캘리포니아 주가 계획 수행에 있어서 주정부의 성공과 주의 지방정부 단위의 성공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과목표 및 측정기준을 채택하는 방법으로 계획의 각 요소를 달성하는 일정, 주정부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 및 그러한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 그리고 각 성과목표의 달성을 책임질 공무원에 관한 설명을 포함.

주무장관은 지역 선거담당관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그리고 제III편 부속편 B에 따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채택한 자발적인 지침을 고려한 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 ◆ HAVA 기금을 수령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의 효과성을 결정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대한 설명,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 책임 공무원의 명사와 같은 성과목표와 측정기준을 개발;
- ◆ 지역 선거담당관 및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및 단체와 협의하여 주정부, 지방정부 단위 및 다른 단체가 목표를 달성하고 HAVA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는 것을 모니터.

## 제9장: 주 단위 행정 불만제기절차

### 제254(a)(9)조, 74 페이지

제402조에 의해 시행되는 통일되고 비차별적인 주 단위 행정 불만제기절차에 대한 설명.

제402조(126-128 페이지)는 주정부가 다음과 같은 주 단위 행정 불만제기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 ♦ 통일되고 비차별적;
- ♦ 제III편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확신하는 모든 사람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
- ♦ 불만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
- ♦ 불만의 통합을 허용;
- ♦ 불만제기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식적인 심리에 회부;
- ♦ 주정부가 제III편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판정하는 경우 적절한 구제를 제공;
- ♦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는 경우 불만을 각하하고 그 결과를 공시;
- ♦ 불만제기자가 판정 기한을 연장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불만이 제기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종 판정;
- ♦ 주정부가 위에 기술된 90일의 기한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 분쟁 해결 절차를 제정할 것을 규정.

기존의 절차에 의해, 모든 사람은 선거법이나 선거절차가 위반되었거나, 그러한 위반이 진행 중이거나, 또는 위반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최고선거책임자인 주무장관에게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료 전화번호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제공됩니다. 불만은 주무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주장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실의 하나 이상의 부서가 많은 경우에 지역 선거담당관 및 다른 주 공무원과 협조하여 조사를 수행합니다.

주무장관은 지역 선거담당관 및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및 단체와 협의한 후에 HAVA 제402조를 준수하는 통일되고 비차별적인 주 단위 행정 불만제기절차를 제정했습니다. 이 절차는 개인에게 HAVA 제III편의 시행과 관련된 불만을 제기하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수단과 위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를 제공합니다. 이 절차는 소수계 언어 사용 유권자와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불만제기절차는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이 제III편이 위반되었거나, 그러한 위반이 진행 중이거나, 또는 위반의 발생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는 불만을 주무장관에게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HAVA에 의하면 불만제기 서류는 반드시 공증해야 합니다. (불만제기자는 공증인 앞에서 서약한 후 불만제기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불만은 주무장관이 제공하는 소정 양식이나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다른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무장관이 정한 양식은 반드시 적절한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주무장관은 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불만제기절차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불만은 모든 주무장관 사무소에 직접 제기하거나 다음 주소로 서류를 우송하여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Secretary of State, Elections Division, HAVA Complaint, 1500 11th Street, Sacramento, CA 95814. 불만은 해당 위반이 발생한 후 60일 이내 또는 불만제기자가 그러한 위반에 대해 알게 된 후 90일 이내 중에서 더 늦은 날짜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주무장관은 적절한 경우에 불만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불만제기자는 공식적인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무장관은 심리를 구두 증언 또는 서면 증언에 의해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최종 판결은 불만을 제기한 후 90일 이내에 내려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판결 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범죄수사나 다른 법 집행 조치를 방해하지 않는 한 주무장관의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90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불만은 중립적인 심리담당관(Hearing Officer)에게 의뢰되고, 심리담당관은 최초 90일의 기한이 종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판결 결과는 범죄수사나 다른 법 집행 조치를 방해하지 않는 한 주무장관의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 제10장: 제1편에 의한 지불금의 영향

### 제254(a)(10)조, 75 페이지

캘리포니아 주가 제1편에 의한 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이러한 지불금이 이 계획에 의해 수행하도록 제안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설명.

HAVA 제1편에 의해 총 \$8,400만을 수령했습니다. HAVA 제101조에 의해 수령한 지불금은 HAVA 제101(b)(1)(A)-(H)조 및 제101(c)조에 따라 이미 사용했거나 앞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HAVA 제102조에 의해 수령한 기금은 제102(a)(2)조에 따라 2000년 총선거에서 편지카드 투표시스템을 사용한 카운티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1편에 의한 기금은 제1편에 의해 수령한 요건지불금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제11장: HAVA 주 계획 관리

### 제254(a)(11)조, 75 페이지

캘리포니아 주가 이 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단 주정부는 이 계획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적절하게 통보되고 공표될 때까지는 이 계획의 관리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최고선거책임자인 주무장관은 HAVA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감독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무장관은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 ◆ HAVA에 의한 기금을 수령하는 모든 공무원이나 다른 단체는 시행의 진도에 관해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 기금은 일정계획 또는 프로젝트의 한 단계를 만족스럽게 완료했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다음 단계에 대한 기금을 분배하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불됩니다;
- ◆ 주 계획의 관리와 시행에 관해 발견된 문제점 및/또는 중대한 변경 필요에 대해서는 지역 선거담당관과 이 계획의 작성에 참여한 캘리포니아 주 계획 자문위원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및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 ◆ 주 계획이 연방관보에 적절하게 통보되고 공표될 때까지는 이 계획의 관리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제12장: 이전 회계연도로부터 변경된 주 계획

### 제254(a)(12)조, 75 페이지

이전 회계연도 동안 이 부속편에 따라 주 계획을 시행한 주의 경우, 이 계획이 이전 회계연도의 주 계획으로부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방법과 그 주가 그러한 이전 회계연도에 주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방법에 대한 설명.

해당 없음. 금년이 캘리포니아 주 계획을 시행하는 첫 해입니다.

## 제13장: 주 계획 수립 위원회

### 제254(a)(13)조, 76 페이지

제255조에 따라 주 계획 수립에 참여한 위원회와 이 조 및 제256조에 의해 위원회가 따른 절차에 대한 설명.

개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계획은 다양한 분야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표하는 24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제255(a)조의 요구에 따라, 이러한 개인들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연방선거를 실시하는 두 개의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관할구(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최고선거담당관, 다른 지역 선거담당관, 장애인 그룹의 대표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 및 다른 개인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성원의 리스트 및 경력에 대한 정보는 37 페이지에서 시작됩니다.

개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원회는 5회의 공청회를 열어 공중의 의견을 요청하고 청취했습니다. 그 후에, 위원회는 새크라멘토에서 회의를 열었고, 위원들은 예비 주 계획의 내용에 관해 주무장관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주무장관은 예비 주 계획의 초안을 작성할 때 이러한 추천사항과 공중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참고했습니다.

예비 계획이 심사와 의견 청취를 위해 제공되었을 때 공중의 구성원과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은 추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주무장관은 캘리포니아 주 계획을 작성할 때 이러한 의견들을 주의 깊게 고려했습니다.

주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위원회가 따른 절차에 대한 설명은 6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위원회 구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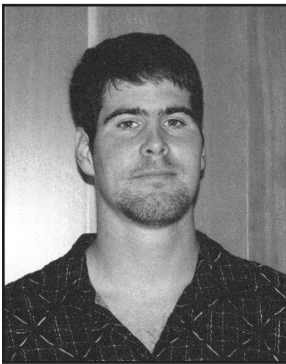
**Rob McKay, 의장**  
**McKay Foundation(재단)**

McKay 씨는 사회 및 경제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그룹에 보조금을 수여하는 가족 재단인 McKay Foundation의 이사장입니다. 또한, 그는 초기 단계 기술 및 소비자 제품 회사에 대해 벤처 캐피털을 제공하는 McKay Investment Group(투자 그룹)의 경영파트너입니다. 그는 투표 절차 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002년 11월의 투표에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선거일 유권자 등록(Election Day Voter Registration)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인 발의안 제52호를 지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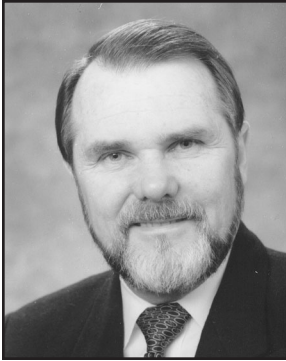
**R. Michael Alvarez**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Caltech(정치학 교수, Caltech)**  
**Caltech/MIT Voting Technology Project(투표 기술 프로젝트)**

R. Michael Alvarez는 1992년 12월부터 Caltech에서 정치학을 강의했습니다. 그는 1986년에 Carleton College에서 정치학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Duke University에서 1990년과 1992년에 각각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연구와 강의를 미국의 선거정치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Alvarez 교수는 선거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을 연구하는 Caltech/MIT Voting Technology Project의 공동책임자입니다. 그는 국방부와의 연락을 통한 해외 거주 민간인 및 군인에 대한 인터넷 투표를 연구하는 Secure Electronic Registration and Voting Experiment(안전한 전자식 등록 및 투표 실험, SERVE)의 책임연구자입니다. Alvarez 교수는 최근에 Thad Hall과 공저한 인터넷 투표의 가능성에 대한 "Point, Click and Vote(마우스로 가리키고 클릭하여 투표하기)"라는 새로운 책을 출간했습니다.



**Harley Augustino**  
**Coalition for a Living Wage(생활임금연합)**

Harley Augustino는 경제정의정책을 지지하고 저소득층 주민의 힘과 리더십을 구축하는 산타바바라의 노동계 연합인 Coalition for a Living Wage의 현장 조직책임자입니다. UCSB를 졸업한 그는 대학 및 커뮤니티에서 몇 건의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참가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1998년에 Isla Vista Tenants' Union(임차인주자협회)을 공동 설립했고, 2000년에는 4년 임기의 Isla Vista Recreation and Park District(오락 및 공원 구역)의 책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Robert Balgenorth**  
**State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캘리포니아 주 건설업 근로자 협의회)**

Robert Balgenorth는 1993년부터 AFL-CIO 회원인 State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California의 회장입니다. 200여 개의 건축업 지역 노동조합과 지역 협의회를 대표하는 이 협의회는 약 400,000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주 건축업계 근로자의 경제 상황, 건강 및 직업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1999년에 Governor's Commission on Building for the 21st Century(21세기 구축을 위한 주지사위원회)에 임명되었고 시설 및 재정 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았습니다. 2002년에는 Workforce Investment Board(인력투자위원회)와 그가 부의장을 맡고 있는 California Transportation Commission(캘리포니아 교통위원회)에 임명되었습니다.



**Ardis Bazyn**  
**California Council of the Blind(캘리포니아 시각장애인협회)**

Ardis Bazyn은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American Council of the Blind의 재무 책임자; California Council of the Blind 간사; Independent Visually Impaired Entrepreneurs(자립 시각장애기업인)의 수석 부회장 및 Randolph Sheppard Vendors of America(미국 판매업자)의 이사회 구성원입니다. 그녀는 영향력 있는 연사이고, 코치이며 Bazyn Communications의 저술가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기사와 저서를 출판했습니다. 2001년에는 Blind Students of California(캘리포니아 맹인 학생)를 위해서 "A Guide to a Successful College Experience(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녀는 몇 개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고 다양한 기업 및 소비자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Miguel Contreras**  
**Los Angeles County Federation of Labor, AFL-CIO**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노동총연맹)**

Miguel Contreras는 Los Angeles County Federation of Labor, AFL-CIO의 집행간사-재무책임자입니다. 그는 750,000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350개의 가맹 노동조합이 소속된 107년의 역사를 가진 노동총연맹에서 최초로 선출된 중남미계 지도자입니다. 그는 L.A.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로스앤젤레스 관광청), United Way of Los Angeles, Los Angeles Airport Commission(공항위원회) 및 California Narcotic Addicts Evaluation Authority(캘리포니아 마약중독자인증기관)의 이사진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년 간 Hispanic Business Magazine의 "가장 영향력 있는 남미인 100인"에 선정되었습니다.



## Francisco Estrada

**Mexic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al Fund  
(멕시코계 미국인 변호 및 교육 기금, MALDEF)**

Francisco Estrada는 Mexic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al Fund(MALDEF) 새크라멘토 사무소의 수석정책분석가로서 교육 및 토지 사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California Futures Network(캘리포니아 미래 네트워크)의 운영위원회에서 MALDEF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MALDEF에 재직하기 전에는 오래 동안 Bob Filner 상원의원의 참모로 일했습니다. 그는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레벨에서 수자원, 폐수, 교통 기반시설 프로젝트, 이민, 에너지 및 환경보호를 포함하는 수많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 Kathay Feng

**Asian Pacific American Legal Center  
(아시아 및 태평양계 미국인 법률 센터, APALC)**

Kathay Feng은 Asian Pacific American Legal Center의 투표권 부서의 프로그램 디렉터입니다. 그녀는 투표권 및 선거구 조정, 증오범죄, 경찰책임 및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민권 분야에서 일해 왔습니다. 현재는 투표권, 언어에 대한 권리 및 소비자 권리와 같은 주요 정책 문제에 대해 전주 옹호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APALC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Feng 여사는 Asian Pacific Policy & Planning Council(아시아 태평양 정책 및 계획 위원회),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s Advisory Committee on Voter Participation and Outreach(유권자 참가 및 현장 지원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무장관 자문위원회), LA County Human Relations Commission(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인간관계위원회), LAPD Police Chief's API Forum(LAPD 경찰국장 API 포럼), Asian Pacific American Police Advisory Council(아시아 및 태평양계 미국인 경찰자문위원회), Organization of Chinese Americans(중국계 미국인 기구) 및 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Women's Forum's Los Angeles Board(전미 아시아 및 태평양계 미국인 여성 포럼 로스앤젤레스 위원회)에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었습니다.



## Rosalind Gold

**National Association of Latino Elected and Appointed  
Officials (NALEO) Educational Fund  
(전미 중남미계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 협회(NALEO) 교육 기금)**

Rosalind Gold는 NALEO 교육기금의 정책, 연구 및 옹호 담당 수석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십여 년 동안 이 단체의 귀화 및 중남미계 정치력 강화 활동에 대한 정책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녀의 전문분야에는 선거개혁, 10개년 인구조사, 미국 이민관료주의에 대한 구조조정이 포함됩니다. 그녀는 Harvard 법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클레어몬트에 있는 Pomona College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 Margaret Jakobson

**Protection & Advocacy, Inc. (보호 및 옹호법인, PAI)**

Margaret Jakobson은 California Protection and Advocacy, Inc.(PAI)에서 16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스텝 변호사로서 발달장애가 있는 의뢰인들을 6년 간 변호했고, 그 후에는 신체, 정신 및 지각장애가 있는 의뢰인들을 변호했습니다. 그녀의 전문분야에는 특수교육 문제, 발달장애 서비스 시스템 자격, 그리고 대중교통수단과 관련된 소송을 포함하는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장애인 보호법) 소송이 포함됩니다. 그녀는 1999년에 오클랜드 지역 사무소의 경영변호사가 되었고 2001년에 샌디에고로 이주할 때까지 그 직위를 유지했습니다. 샌디에고에서는 새 PAI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사무소의 경영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전문분야는 특수교육,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소송, 교통법, 투표권 및 기타 서비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민권옹호입니다.



## Cyndi Jones

**Exploding Myths, Inc.(통념 불식 법인)**

Cyndi Jones는 Exploding Myths, Inc.의 회장입니다. 그녀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옹호자로서 40년이 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발행인으로서 MAINSTREAM 잡지를 4 페이지짜리 지역 뉴스레터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을 수상한 높은 수준의 전국적인 잡지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녀는 미디어 및 장애 문제에 대한 많은 국가 위원회에서 재직했으며, 여기에는 미디어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소수계 그룹에 대해 논의한 1993년도 Freedom Forum(자유포럼)의 New Directions for News(뉴스의 새로운 방향) 컨퍼런스가 포함됩니다.



## Laura Kerr

**California State Student Association(캘리포니아 주 학생협회)**

Laura Kerr는 California State Student Association 정부관계 담당 디렉터입니다. 그녀는 1998년부터 전주 학생옹호 및 고등교육정책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습니다. 그녀는 이 협회의 등록로비스트로서 CSU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캘리포니아 주의 고등교육정책을 형성하는 공공정책 개발, 인물 및 기관을 면밀하게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직위에서 협회의 유권자 등록, 유권자 교육 및 투표 촉진 캠페인을 조정하고 California Youth Vote Coalition(캘리포니아 청소년투표연합)의 스텝 연락관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001년에 Humboldt State University를 졸업했습니다.



**Geoffrey Kors**  
**Equality California (평등 캘리포니아, EQCA)**

Geoffrey Kors는 캘리포니아 주의 남성 및 여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LGBT) 로비 단체인 Equality California(EQCA)의 집행이사입니다. Equality California는 전에 California Alliance for Pride and Equality(캘리포니아 금지 및 평등 연합, CAPE)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Kors씨는 Stanford 법대를 졸업했으며 20년 간 LGBT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EQCA에 참여하기 전에는 법률회사인 Wotman, Kors & Clouiter, LLP의 파트너로서 주로 동성애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취급했습니다. 그는 일리노이 주 ACLU의 Gay and Lesbian Rights(남성 및 여성 동성애자의 권리) 및 AIDS and Civil Liberties(AIDS와 인권) 프로젝트의 디렉터로 재직했으며 샌프란시스코 행정집행관 Leslie Katz의 수석보좌관이었습니다. Kors씨는 지금은 캘리포니아 주 하원 법안인 AB 17의 바탕이 된 샌프란시스코의 Equal Benefits Ordinance(동등혜택조례)를 기초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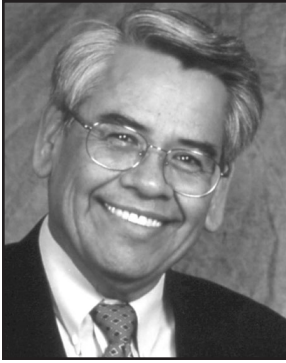
**Cynthia McClain-Hill**  
**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Business Owners**  
**(전미여성사업소유주협회, NAWBO)**

Cynthia McClain-Hill은 로스앤젤레스의 법률회사인 McClain-Hill Associates의 창업자이자 사주입니다. 이 법률회사의 전문분야는 토지사용, 계획 및 환경법, 공법 및 행정법 및 공공정책 개발 및 옹호입니다. 그녀는 현재 National Health Foundation(국립보건재단)의 이사회 구성원이고, 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Business Owners-Los Angeles의 회장 당선자이고, UCLA Foundation Board of Councilors(UCLA 재단 평의원위원회)의 구성원이며, 여성과 미성년자의 기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자선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McClain-Hill 여사는 전에 California 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캘리포니아 공정정치관행위원회)의 위원으로 주정부에 재직했었고 현재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로부터 California Coastal Commission(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Conny McCormack**  
**Los Angeles County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등록담당관/카운티 서기)**

Conny McCormack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등록담당관/카운티 서기입니다. 유권자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그녀는 400만 명이 넘는 등록유권자와 5,000개의 선거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최대의 선거관할구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연방, 주 및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계약을 통해서, 88개 시, 100개 교육구 및 149개의 특별구에 대한 지방선거를 실시 또는 지원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유권자 등록담당관이 되기 전에는 1987년부터 1994년까지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유권자 등록담당관으로 재직했고 1981-1987년에는 텍사스 주 달라스 카운티의 선거행정관이었습니다. 이밖에도, 그녀는 5개국에 대해 국제 선거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Eliseo Medina**  
**Organization of Los Angeles Workers**  
**(로스앤젤레스 근로자 기구, OLAW)**

Eliseo Medina는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두고있는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국제서비스업고용노동조합, SEIU)의 국제경영부사장입니다. 그는 SEIU를 서부지역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노동조합,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와 미국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는 1996년에 멕시코계 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150만 명의 회원을 가진 SEIU의 최고직에 선출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민근로자의 권리와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에 주력함으로써 천주교회 노동운동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Vigo G. (Chip) Nielsen, Jr.**  
**Nielsen, Merksamer, Parrinelo, Mueller & Naylor, LLP**

Chip Nielsen은 연방 및 캘리포니아 주 선거운동, 이니셔티브, 로비활동, 이해의 충돌 및 비영리 관계법의 탁월한 전문가입니다. 그의 회사는 50개 주 전체에서 선거운동, 로비활동 및 증여법에 대해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그는 Practicing Law Institute의 연례세미나의 공동 의장이고 "Corporate Political Activities(법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판례집의 공동 편집자입니다(1978년-현재). 그는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의 자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1993년-현재). 그는 주지사 Pete Wilson 위원회(1989년-1999년); 상원의원 Pete Wilson 위원회(1981년-1991년); 샌프란시스코 시장 입후보자 Art Agnos(1987년-1991년); 샌프란시스코 시장 입후보자 George Moscone(1975년-1978년)의 법률고문을 역임했습니다.



**Art Pulaski**  
**California Labor Federation, AFL-CIO (캘리포니아 노동연맹)**

Art Pulaski는 California Labor Federation, AFL-CIO의 집행간사 겸 재무책임자입니다. 그가 재직하는 동안, 연맹의 평회원의 수가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We Do the Work(우리가 노동한다)"의 회장으로, 그는 전국에 방영된 성공적인 PBS 텔레비전 시리즈를 제작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Council for Economic and Environmental Balance(경제 및 환경 균형 협의회), Labor Project for Working Families(근로가족을 위한 노동 프로젝트), State Workforce Investment Board, Governor's Commission on Building for the 21st Century 및 Potomac Board of Governors(포토맥 주지사위원회)의 이사회에 재직했습니다.





### **Ann Reed**

**President, California Association of Clerks and Elections Officials and the Shasta County Registrar of Voters  
(캘리포니아 서기 및 선거담당관 협회 회장 겸 샤스타 카운티 유권자 등록담당관)**

Ann Reed 는 California Association of Clerks and Elections Officials의 회장입니다. 그녀는 샤스타 카운티의 서기/유권자 등록담당관으로 선출되었는데, 처음 선출된 것은 1982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직위에 선출되기 전에, 1978년부터 카운티 부서기/유권자 등록담당관이었으며 1963년부터 이 직위에 재직했습니다.



### **Steve Rodermund**

**Orange County Registrar of Voters  
(오렌지 카운티 유권자 등록담당관)**

Steve Rodermund는 오렌지 카운티 유권자 등록담당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카운티로서 등록유권자 수가 130만 명이며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및 베트남어로 언어 지원을 해야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현재 펀치카드 투표시스템을 Hart DRE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중이며, 2004년 3월부터 카운티 전체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Rodermund씨는 1992년에 군에서 퇴역했습니다. 그 후, 그는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과 오렌지 카운티 집행사무소의 여러 직위에서 근무했습니다.



### **Arturo Rodriguez**

**United Farm Workers of America, AFL-CIO  
(미국농장노동자연맹)**

Arturo Rodriguez는 United Farm Workers of America, AFL-CIO의 회장입니다. 그는 회장으로서 1993년에 작고한 Cesar Chavez가 창설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Rodriguez씨는 Chavez씨의 회장직을 승계했습니다. 그는 1969년부터 노동조합 활동과 그 임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1995년의 AFL-CIO의 최고기관인 집행위원회에 선출되었습니다.





**Marion Taylor**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여성유권자연맹)**

Marion Taylor는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의 운영이사입니다. 1968년부터 League of Women Voters 회원이었던 그녀는 연맹의 유권자 서비스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특히 전주 투표 법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입후보자 포럼의 사회를 담당했습니다. 그녀는 특정 주소에 대해 맞춤형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하고 선거담당관, 입후보자, 신문 및 초당파적인 웹사이트에서 입수한 정보를 통합하는 온라인 안내서인 Smart Voter(현명한 유권자)에 정보를 기고합니다. 그녀는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Cruz에서 25년 간 사서로 재직했습니다.



**Ted Wang**  
**Chinese for Affirmative Action**  
**(차별철폐를 위한 중국인 모임, CAA)**

Ted Wang은 Chinese for Affirmative Action(CAA)의 정책 담당 디렉터로서,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영향을 주는 민권 문제에 대한 옹호 활동과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직업 교육을 감독합니다. Wang씨는 캘리포니아 주 및 지역 수준에서 수많은 이민 및 민권 법과 정책을 기초했고, 연방 Voting Rights Act와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를 위반한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VRA 제203조의 언어 지원 요건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 계획과 유자격 죄수들에게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구치소에서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절차를 수립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CAA에 합류하기 전에, Wang씨는 Lawyers' Committee for Civil Rights of the San Francisco Bay Area(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민권을 위한 변호사 위원회)의 스태프 변호사였습니다.



**Geraldine Washington 박사**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 NAACP)**

Geraldine Washington 박사는 로스앤젤레스 NAACP의 회장입니다. 그녀는 NAACP 지부 회장 및 부회장, Women In NAACP의 회장 및 부회장, 그리고 서부 9개 주, 일본, 독일 및 한국으로 구성된 지역 1의 근로장려 조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녀는 Los Angeles County EEOC Advisory Council(로스앤젤레스 카운티 EEOC 자문위원회), Media Image Coalition(미디어 이미지 연합)(인간관계 소위원회), 그리고 African American Jewish Leadership Connection(아프리카계 미국인 유대인 리더십 단체)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권말주



## 권말주

- <sup>1</sup> Voting-eligible turnout estimate(유권자 투표율 평가), Michael P. McDonald 박사, George Mason University, [http://elections.gmu.edu/voter\\_turnout.htm](http://elections.gmu.edu/voter_turnout.htm) 참조.
- <sup>2</sup> Report of Registration(등록 보고서), 주무장관, 2003년 2월 10일.
- <sup>3</sup> 선거법 §10, 정부법 §12172.5.
- <sup>4</sup> Report of Registration(등록 보고서), 주무장관, 2003년 2월 10일.
- <sup>5</sup> 통계.2001, c. 922 (AB 1520-Shelley).
- <sup>6</sup> 공법 107-252.
- <sup>7</sup> 접수한 모든 의견, 그리고 청문회와 관련하여 제작된 모든 문서와 자료들은 다음 기관에서 검토를 위해 제공합니다: Office of the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Elections Division, 1500 11th Street, 5th Floor, Sacramento, California 95814.
- <sup>8</sup> 접수한 모든 의견, 그리고 주 예비계획과 관련하여 제작된 모든 문서와 자료들은 다음 기관에서 검토를 위해 제공합니다: Office of the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Elections Division, 1500 11th Street, 5th Floor, Sacramento, California 95814.
- <sup>9</sup> 참조된 페이지는 캘리포니아 주무장관실 웹사이트 [www.ss.ca.gov](http://www.ss.ca.gov)에 게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HAVA 최종본의 페이지입니다.
- <sup>10</sup>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참조된 모든 "편" 번호는 HAVA의 번호입니다.
- <sup>11</sup> 선거법 제10조 및 정부법 제12172.5조.
- <sup>12</sup> 선거법 제10조 및 정부법 제12172.5조.
- <sup>13</sup> 선거법 제10조 및 정부법 제12172.5조.
- <sup>14</sup> 특정한 상황에서는, 2006년 1월 1일까지 이 요건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 마감일은 2004년 1월 1일입니다.
- <sup>15</sup> 선거법 제10조 및 정부법 제12172.5조.
- <sup>16</sup> 발효일은 제303(d)(1)(A) 또는 (B)조의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sup>17</sup> 선거법 제10조 및 정부법 제12172.5조.
- <sup>18</sup> 선거법 제10조 및 정부법 제12172.5조.
- <sup>19</sup>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가 HAVA를 준수하는 전주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가정에 의합니다.
- <sup>20</sup> 선거법 제10조 및 정부법 제12172.5조.
- <sup>21</sup> 선거법 제10조 및 정부법 제12172.5조.
- <sup>22</sup> 이것은 총지출 금액을 HAVA 제257(a)(1)조에 의해 2003 회계연도에 허가된 \$14억이 아니고 \$8억 3,000만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차후 연도의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myVote  
COUNTS

[www.myvotecounts.org](http://www.myvotecounts.org)